고 시

건설교통부고시 제2002-274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 되는 정보통신망 지정

건설교통부는 지난 12월 3일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는 경우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을 다음과 같이 지정 · 고시하였다. (이와 관련내용은 2003년도 신년호에 게재할 예정임)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가 발주자에게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전자적으로 통보하는 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다.

건설공사대장에는 도급계약내용, 현장기술자 배치현황, 공사진척 및 대금수령상화, 하수급인 현황 등 건설공사수행과 관련된 각종 정보가 종합 기재되며, 정보통신망에 통보된 건설공사정보는 종합관리되어 발주자 편의 및 건설산업의 건전성 강화에 활용된다.

1]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

(1)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 1월 1일부터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건설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2004년 1월 1일부터는 도급금액 1억원이상인 건설공사로 확대 적용된다.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냐에 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 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통보하여야 한다.

2]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되는 정보통신망 건설공사기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자가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 통보에 이용하여야 하는 정보통신망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www.kiscom.net)으로 한다.

3] 시행일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